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237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정대홍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 의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632,8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매매계약은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 사이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부분 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와 피고 C의 어머니인 망 F가 2021. 7. 5. 사망하였고, E는 2021. 8. 10.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21. 8. 13. 수리된 사실, E와 피고 C 등 상속인들은 2021. 9. 1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21. 9.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별지